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연구: 지역 및 의정경험에 대한 SNA 분석

서인석*
조일형**
이종구***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18대 상임위원회의 지역 및 의정경험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상임위원회의 속성에 따라서 지역 및 의정경험이 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 만약 상임위원회가 바람직한 분포 및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면, 이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삶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들은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지만, 영향력 있는 지역과는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음으로써 지역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교적 소외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둘째, 전문지식을 요하는 상임위원회들은 중심성 수치가 높은 지역들이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적 차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 상임위원회들에 과집중 되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고려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역량을 요하는 상임위원회들은 전체적으로 중심성 수준이 확보되었다.

주제어: 지역구, 의정경험, 상임위원회, SNA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국회 입법과정 및 정책결정, 정책분석, 정책평가, 방법론 등이다 (inseok800414@naver.com).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이론, 정책분석, 정책평가 등이다(getto111@naver.com).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동 대학의 글로벌리더 학부에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정책이론과 정책평가이다(lcejku@skku.edu).

I. 서론

사회적 복잡성과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실질적인 법안의 발의 및 심사뿐 아니라 행정부 감시의 기능까지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Davidson and Oleszeck, 1996: 195-200)¹⁾. 이는 본회의 단계가 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나 실제로는 법안 및 예산 심의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회의 과정은 형식적이며, 따라서 국회의 입법권은 실제로 본회의 보다는 상임위원회라는 소입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Goodwin, 1970).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은 대부분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며,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물론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위원회가 보고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제18대 국회에서 7건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다. 따라서 국회 입법에서 어떠한 의제를 논의 하고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영향력은 상당히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전진영, 2012: 58).

이렇게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강력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치력 증대를 중시한다면 의원들은 권위나 중요성을 인정받는 위원회를 상대적으로 선호할 수 있다(이현우, 2009: 158). 과연 상임위원회 간의 구조와 핵심 위원회는 어디일까? 상임위원회의 배정과 구성은 이들 사이의 권한 및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권한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구성원들이 선택하고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의정경험이 높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전문성 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상임위원회를 선택하고 그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비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의원이 분포된 상임위원회일지라도 특정지역의 인원이 한 상임위원회

1) Davidson and Oleszeck(1996: 195-200)은 국회 본회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어 그 의미는 크지만, 그 규모와 전문성이 특정사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실제 결정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에 다수 포진될 경우, 지역적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균형있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만일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구성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법안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 형평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²⁾ 결국, 상임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현안을 다루고 이를 대표하기 위해서 지역적 대표성과 법률을 형성하는데 있어 정치적인 역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를 다루는 연구들은 구성적인 특징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못하며, 소수의 연구(가상준, 2007; 2009)에서도 선호되는 위원회의 여부를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어느 위원회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분석하거나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하다. 이는 곧 각 상임위원회가 각 지역들과의 관계성 및 의정경험과의 연계 하에서 중요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상임위원회 간 강도의 차이가 현상적으로 규명되어야 비로소 상임위원회 구성과 배치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와 지역,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의정경험과의 관계성에 기초하여 핵심 위원회를 규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연결망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은 사회 행위자들이 상호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각 행위자들이 어떠한 기관들을 통해서 관련될 수 있을지 등의 행위자와 행위자 또는 행위자와 관련기관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론이다. 특히, 2-mode SNA는 상이한 속성을 지닌 행위자 2세트들 간의 관계에서 패턴을 찾아내어 구조적 관계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갖는 함의를 쉽고, 명확하게 인식하는데(Wasserman and Faust, 1994)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연결망분석에서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통해 이들 중 가장 중요한 행위자와 관계성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첫째, 위원회의 특성을

2) 한편,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기능별로 구분되어 운영토록 하고 있지만, 예산결산과 같은 부분은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의원들에 의해 협상이 진행될 필요가 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이를 의결토록 한다. 이러한 목적과 달리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나치게 초선의원의 비중이 높아(입법조사분석실, 1998: 17) 정치적 협상능력이 매우 중요할 수 있는 예산결정과정에서 심의능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을(곽해곤, 1998: 10) 선행연구들은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국회 구성에 있어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선행연구 및 논리에 기초하여 몇 가지로 구분한 후, 그 각각의 지역 및 의정경험의 분포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둘째, 지역 및 의정경험 각각의 관점에서 상임위원회 사이의 중요도를 구분함과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의 상임위원회가 어디인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상임위원회가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만일 편향된 결과가 나타난다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전략적 방안이 요청되어야 할 것이다.

II. 이론적 검토

1. 상임위원회의 의의 및 특징

국회 의사결정과정을 광의로 바라보면 행정부를 감독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의회의 모든 기능과 활동을 포함하지만(Galloway, 1955: 3), 일반적으로는 민의를 수렴하여 의원이나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을 조정·타협하여 통일된 의사결정으로 수렴하는 의회과정으로(최정원, 2001: 132) 바라볼 수 있다. 또한, 본회의 단계가 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나 실제로는 법안 및 예산 심의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회의 과정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즉, 국회의 입법권은 실제로 본회의의 보다는 상임위원회에 있다(Goodwin, 1970).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심의대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여론 수렴의 폭을 확대하며, 심의권을 분산시키고 의원들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에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받아들여진다(입법조사분석실, 1998: 10). 또한, 특정의 국정분야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제도가 확립되면 심의의 안정과 지속성을 제고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박찬표, 1998: 20). 즉, 상임위원회는 전문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하며, 정치적인 논쟁보다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이끌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듯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상임위원회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안전에 대한 수정권 및 폐기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제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받고 있다. 이는

상임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할 수 있어야 전체 예산안에 포함되기 전 중요한 ‘필터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사안에 따라 상임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도 대표성을 가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한편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심의가 지역구의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기도 하며, 또 한편에서는 당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이론적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먼저, 이익분배이론으로 개인의 입장에서 재선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정치적 지지가 필수이며, 이에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Fiorina, 1987; Mayhew, 1974). 이익분배이론에서는 행위자가 어떠한 위원회에 속하는가와 재선가능성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며, 영향력이 높은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또한 증가시킬 것(이현우, 2009: 149)으로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개인 이해관계의 선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이는 상임위원회 개인의 목표³⁾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상임위원회이며,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로, 정보확산이론⁴⁾에서 위원회는 이러한 틀 속에서 효과적인 분업화를 통해 그리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통해 본회의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획득하여 본회의에 제공하여 줌으로써 본회의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Gilligan and Krehbiel, 1990).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상임위원회를 본회의의 귀속체로써 간주한다. 셋째로, 정당이익이론으로 정당 지도자나 핵심적인 정치권력을 가진 자(여당의 수장인 대통령도 포함됨)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원회에 배정되게 하여 의원들의 조화와 단합을 통해 의사결정을 이루어 정당의 위상 및 명성을 높임으로써(Cox and McCubbins, 1993) 궁극적으로 정당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의원들 사이의 권력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를 해결하는 매개체로써 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으나, 지역 및 국민을 위해 결정되어야 할 의제가 정당집단의 이해관계추구

3) 여기서 개인의 목표란 자신이 추구하는 재선이나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의 정책구현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4) 정보확산이론은 상임위원회를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집단적 이득을 취합하려는 기구로 간주한다(Krehbiel, 1991: 5).

로 결정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이론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 우리의 경우 위원회 배정에 있어 의원들의 이념보다 의정경험이 중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주장(가상준, 2009: 72)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회 의원직 수행 등의 경험 역시도 상임위원회 특성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초선 의원이 국회 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의원들의 의정경험이 위원회 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상임위원회가 지역 및 의원선수의 비중이 편중될 경우, 특정 지역의 이익이나 선수가 높은 의원의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 비효율적 의사결정을 야기하는 매개기구로써 전락할 수도 있다.

2. 상임위원회 구성: 선호와 특성

의회란 국가의 이익이라는 전체로써 하나의 목표를 위한 심의적 집단이며 지역적 목적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전체를 위한 일반선(*general good*)을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Edmund Burke, 1790)과 지역구민을 대표하는 대변인(*delegate*)의 관점으로(Pitkin, 1967)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위원회 내에 정당의 분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데 만일 위원회내의 구성은 비율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위원회 내 정당구성원에 선수 간 편중성이 존재할 수 있다. 즉, 특정 정당의 평균선수가 다른 정당의 평균선수에 비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체의 일반적인 과제를 결정하는데 균형이 있는 시각을 견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가상준(2009: 91-92)은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는 상대적으로 의정경험이 높은 의원이 배정되어 있었고, 민주당 소속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에 비해 의정경험이 낮은 의원들이 배정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곧 정당의 영향력이 보다 커질 수 있는 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정치적 힘이 보다 큰 의원을 배치하여 정당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당의 분포형태와 의정경험은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 불균등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편중된 의원 분포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데, 만일 국토해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의 선호도가 높은 위원회에 여당과 야당, 정당 간 불균등이 존재한다면 특정 정당의 의정경험이 많은 의원에 의한 정책의사결정 및 법안심의가 나타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위원회 내에 지역의 분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특정 지역이 한 위원회 내에 집중적으로 포진된다면 특정이권에 대한 의사결정이 한 지역만을 대표하고 다른 지역의 이권이 간과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구성의 특징을 당선횟수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의원들의 의정경험이 위원회 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가상준, 2009: 73). 즉, 이러한 의정경험이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⁵⁾.

그렇다면, 이러한 선호도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가? 김민전(1996: 8)은 선호도가 높은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일이 많은 상임위원회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소관 부처의 예산이 많고 그 위원회에 회부되는 법안의 수가 많은 위원회가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의원들이 배정 받기를 원한다고 주장하였다. 분명, 높은 선호도를 가진 위원회는 다수의 정책안건과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 내 정당의 위상 제고 및 개인의 지역적 이권창출 모두를 얻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결국 선호되는 위원회는 그 자신의 지역구 상황이나 의회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의원들은 소속정당, 개인의 지역적 특성, 의정경험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 중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는 상임위원회 구성 역시도 이러한 차이에 의해 집중되고 분파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당의 선호도와 의정경험이 잘 반영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가상준, 2007) 주장은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구성적 특징 및 구조적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관할권(jurisdiction) 및 요구집단의 속성이 추가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Cox & McCubbins, 1993; Deering & Smith, 1997). Cox & McCubbins(1993: 200)은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관할권의 외부성(externality) 및 위원회가 상대하는 대상집단(client group)의 성격에

5) 가상준(2009: 73-74)은 설문조사를 통해 국토해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위원회라고 언급하였고,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를 비인기 위원회로 분류한 바 있다.

초점을 맞추어 위원회를 구분한 바 있다. 즉, 외부성의 차원을 표적화(targeted), 혼합화, 일률화(uniform)로 구분하고 수요자 집단을 동질적(homogeneous)/이질적(heterogeneous)으로 구분하여 6개로 유형화하였다⁶⁾. 또한, Deering & Smith(1997)는 위원회가 다루는 정책의 중요도(salience) 및 대립(conflict)정도를 상중하로 구분한 후 위원회를 9가지로 분류하였다⁷⁾. 이러한 기준들은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사안의 특성과 대상에 의해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임위원회는 각각의 사안과 특성에 기초하여 구분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상기의 구분이 미국의 상임위원회 사안과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의 상임위원회의 특성으로 재구성되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상임위원회 구성원의 행태: 의정경험(Seniority) 및 지역구의 대표자(representative)

상임위원회를 바라볼 때 집합체로서 상임위원회를 바라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상임위원들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상기된 언급 하에서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 내부에서의 조직구성원 간 관계로 바라본다면 그들의 경험을 강조할 수도 있으며 개개인의 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표출 할 수도 있다.

6) <Cox & McCubbin의 상임위원회 분류>

		외부성		
		표적화	혼합화	일률화
대상집단	동질적	예) 콜롬비아 특별구	예) 군사위원회	예) 과학위원회
	이질적	예) 농업위원회	예) 사법위원회	예) 세출위원회

7) <Deering & Smith의 상임위원회 분류>

		중요성		
		상	중	하
대립	상	예) 세출위원회	예) 금융위원회	예) 하원 행정규칙위원회
	중	예) 상원 상업위원회	예) 농업위원회	-
	하	예) 군사위원회	-	예) 콜롬비아 특별구

우선, 상임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각각의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representative)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선 헌법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장영수, 2004).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원리, 제7조 1항의 공무원은 전체국민의 봉사자라는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을 대표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고 국민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투표나 여론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정치적 대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⁸⁾. 둘째, 대표자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관점은 Fenno(1973)를 통해서 언급될 수 있다. Fenno(1973)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지역구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고 의회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정치적 야망을 넘어서서 지역적 정책에 집중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Arnold, 1979). 즉, 목표의 우선순위는 비교적 안정적이는데 재선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의회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지역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원의 의정경험(seniority)은 한 위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소속되어 활동 했는가 또는 국회의원으로 몇 번 당선되었는가를 말한다. 선수를 변수로 한 연구는 주로 의원의 재선과 상임위원회 배정(committee assignment),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의원의 선수가 입법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가장 일반화된 이론은 경험이론(Experience Theory)으로(손연우, 2010: 14),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높은 선수에서 오는 정치적 안정성이 성공적인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할 여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의원의 선수 및 경험이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한 Davidson(1969: 91)에 의하면 의회에서 선수가 증가할수록 선거에 대한 패배의 두려움이 낮아진다. 또한, 경험과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ecurity)에 기초해 재선을 위한 관심보다 상대적으로 의회내부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높아질 수 있어 이에 전문적 지식도 갖출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높은 선수는 입법에 대한 지식 자체를 축적시킬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장기간의 경험은 입법과정

8)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정당의 대표자(정당소속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권영성, 2009: 935-936; 김철수, 2007: 1290-1295).

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이는 경험이 낮은 의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입법안이 통과될지 실패할지에 대한 인식적 능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Francis, 1962; Frantzich, 1979; Meyer, 1980; Squire, 1988; Ellickson, 1992: 285-286). 또한, 다선의원은 초선의원에 비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재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집중하기 보다는 입법안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다(Weissert, 1988). 물론 여기에는 선수가 낮은 동료의원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더 높은 인지도의 효과가 동반된다. 구체적으로, 의장과 위원회 내부에서 높은 서열을 가지는 구성원들(ranking minority members of the standing committees)은 선수(seniority)를 통해 공식적 리더십을 획득한다(attend). 이때 의장이나 지위가 높은 구성원(ranking minority member)의 지위는 재선(re-elected), 즉 선수를 통해 확보된다. 선수(seniority)는 위원회 내부 소위원회의 리더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선수가 규칙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유는(adherence to the rule of seniority) 커뮤니티의 리더로서 오랜기간 동안 관련 주제와 이슈를 다루는 경험(experience)을 가졌기 때문이다(Truman, 1966: 57).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의정경험은 상임위원회 내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경험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의사결정의 영향력은 한편으로는 정당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즉, 상임위 구성의 특징은 지역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정당선호를 위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임위원회의 특성과 관련지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4. 18대 상임위원회와 구성

국회법 제38조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운영위원회 24인, 법제사법위원회 16인, 정무위원회 24인, 기획재정위원회 26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9인, 국방위원회 18인, 행정안전위원회 24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1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9인, 지식경제위원회 25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4인, 환경노동위원회 15인, 국토해양위원회 29인, 정보위원회 12인, 여성위원회 16인이 상임위원회의 인원수이다.

현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가 2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보위원회가 12명으로 가장 적은 인원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장에 따른 정당의 분포를 보면 한나라당의 경우 상임위원장은 9명, 민주당의 경우 상임위원장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상임위원장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체 인원 349명에서 한나라당은 200명으로 과반 수 이상인 57.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민주당은 103명으로 29.5%, 자유선진당은 19명으로 5.5%이었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은 27명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가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2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제주’는 3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인원 중 비례대표는 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위원회간의 인원규모의 차이는 보다 다수의 논의와 안건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이는 특정 위원회에서 중요한 정책안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내포한다. 만일 이렇게 집중화된 위원회가 존재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의정직을 수행한 국회의원은 이러한 위원회에 소속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따라서 권한이 높은 위원회에 영향력이 강한 국회의원이 포진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정부 측에서는 주요 상임위원회에 여당의원들을 다수 포진시키거나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⁹⁾. 아울러, 전체적으로 지역구성 인원에 맞게 국회의원이 분포된 경우라도 영향력이 있는 상임위원회에 특정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될 경우 지역의사결정의 형평이 고려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구성적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균형적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사실적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회보좌관 3인(민주당 2명, 새누리당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상임위의 배정은 1차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개인선호에 의해 결정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때 의원들이 특정상임위를 집중적으로 선택한 경우 이를 의정경험과 정당내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선순위로 배정받는다고 하였다. 물론, 대규모 국책사업(예: 4대강)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해양위의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당차원에서 전문성이 높은 의원들을 포진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음을 언급하였다. 즉, 상임위의 의원구성은 지역적 차원과 의정경험 차원이 크게 분포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5. 선행연구검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임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상임위원회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의원들의 상임위원회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김민전, 1996; 박천오, 1998)가 있다. 김민전(1996)은 상임위원회에 대한 의원들의 선호도를 파악하였는데, 연구 결과 소관부처의 예산(특히, 사업비)과 심사 법안수가 많은 위원회가 비교적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반면, 예산과 법안수가 적은 위원회는 의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예산과 법안수가 많은 위원회는 지역구의원들에 의해 선호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 중에서도 비교적 그 의식이 불안하다고 할 수 있는 차점자와의 득표율이 낮은 의원들에 의해서 선호되고 있는 반면, 비교적 선수가 높고 지역구에 있어서 여유가 있는 의원들은 통일외무와 국방위원회와 같이 비교적 일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위원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결과에 김민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의원들의 정치적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박천오(1998)는 국회의원의 편향된 상임위원회 선호성향을 경험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많은 의원들이 소수의 특정 상임위원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의원들의 재선 지향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천오는 의원들의 이 같은 편향된 상임위원회 선호성향은, 한편으로는 의원 각자의 전문성에 부합되는 상임위원회의 배정을 어렵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임위원회의 빈번한 교체현상의 원인이 되는 까닭에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성로, 2001; 손병권, 2004)가 있다. 이성로(2001)는 연구에서 무엇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성적을 결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야의 구별, 의정 경험, 전국구와 지역구의 구별, 학력, 나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야당의원이 여당의원보다 더 높은 활동성적을 보였으며 의정경험이 많을수록 상임위원회 활동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는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 방향은 부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력, 전국구와 지역의 구별은 활동성적에 아무런 차이를 주지 못했다. 한편 손병권(2004)은 야당·여당의 여부, 의정 활동 경험, 연령, 선거 승리의 안전성, 지역(서울과 비서울)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 중 어떤 변수가 개별 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야당·여당의 여부, 연령, 지역은 모두 개별 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에의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연령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선거 승리의 안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의정 활동 경험은 오히려 (-)방향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상임위원회의 구성적 특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최근에 와서야 논의되었다. 가상준(2007, 2009)은 연구에서 17대 국회 상임위원회와 18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선호도를 통해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특징을 분석하고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정치적 선호도와 의정경험을 통해 각 정당이 위원회 배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7대와 18대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대부분 의원들의 정치적 선호도와 당선횟수는 본회의와 소속정당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임위원회를 선택함에 있어 의정경험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위원회 내에 의정경험과 지역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들을 기준으로 어떤 위원회가 가장 주요한 행위자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즉, 의정경험 및 지역을 기준으로 상임위원회 간 차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포함된 요소들(지역 및 의정경험)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이론적 검토에서 Cox & McCubbins(1993), Deering & Smith(1997)는 각각의 기준

에서 미국 상임위원회의 특성을 구분하고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상임위원회는 미국과 같은 상하원 구분이 존재하지 않고 그에 따른 유형화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선행연구들(가상준, 2009; 이현우, 2009; 서인석, 2010)에 기초하여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때 세 가지 차원은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위원회,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위원회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우선, 상임위원회의 특성상 국토해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안과 매우 밀접하기에 상대적으로 다양한 의정경험을 지닌 의원들을 포함하고, 또한 지역적인 분포가 고를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상준(2009: 76-79)은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해양부, 공사 및 공단 등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로 국책사업에 따른 공공분쟁과 갈등이 많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의료 및 보건 분야와 같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경력 및 의정경험을 포함할 수 있고,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관련 소관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정당 간 많은 갈등을 야기했던 방송통신위원회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연구가설1: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보다 다양한 의정경험의 상임위원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며, 보다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것이다.

이에 반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타 위원회에 비해 실무적 전문지식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1선 또는 2선의 젊은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업무와 깊은 관련성을 띤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가상준, 2009: 78). 분명,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상임위원들은 매우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다(서인석, 2010: 82).

연구가설2: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 지역적 분포와는 관련 없이 보다 열의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초선 및 재선 의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을 것이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¹⁰⁾는 국가운영과 관련된 측면에서 보다 정치적 역량이 높은 의원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따라서 지역적 특성은 크게 고려치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회운영위원회의 경우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들을 다룸으로써 국회내부의 운영을 위한 가이드를 조장하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총괄조정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 지자체 의안과 청원의 심사 등을 다룸으로써 정부부처의 일괄사항을 조정·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가설3: 정치적 역량을 요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 지역적 분포와는 관련 없이 보다 국가운영을 리드할 수 있는 다선 의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의정경험 및 지역을 중심으로 할 때 상기와 같은 세 가지 연구 질문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는 상임위원회를 세 가지로 국민생활 연관 위원회, 전문지식 필요 위원회, 정치역량 필요 위원회로 구분한 것이라 언급할 수 있다. <표 1>는 연구문제, 상임위원회 범주, 해당상위원회를 관련지어 제시한 것이다.

10) 가상준(2009)은 정보위원회 역시 국방위원회와 같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음을 언급하였지만, 국방과학기술 등의 전문성에 비해 정보위원회는 비교적 그 전문성이 낮을 수 있으며(이현우, 2009), 정보위원회는 정보를 다루는 역할에 있다 보니 보다 정치적 역량이 높아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 연구문제의 구분¹¹⁾

연구문제	상임위원회 범주	관련논의	해당상임위원회
연구가설1	국민생활 연관 위원회	가상준(2009)	국토해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연구가설2	전문지식 필요 위원회	가상준(2009), 서인석(201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가설3	정치역량 필요 위원회	가상준(2009), 이현우(2009)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2. 분석방법: 다속성 네트워크(2-mode SNA)

본 연구에서는 분석방법으로써 SNA(Social Network Analysis)를 활용하고자 한다. SNA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야, 물리학 및 생물학 등의 자연과학 분야, 그리고 의학을 포함한 생명과학 분야에 까지 널리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다(김용학, 2007).

SNA는 사회적 속성(Social entities)들의 연결성(linkage)과 이 연결성의 함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속성은 일반적으로 행위자(actor)로 언급되며, 이는 개인, 단체(corporate) 또는 집합적 사회단위(collective social units)로 구별될 수 있다¹²⁾. 네트워크 분석의 가장 큰 강점은 행위자들 간의 결합된 단위를 관계도로 모형화 할 수 있다는 데 있다(Wasserman and Faust, 1994: 3-4)¹³⁾.

1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논리에 근거하여 상임위원회를 구분 지었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재분류되어야 할 연구대상이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들이 이 분류를 연구대상으로 지속할 때 보다 일반화된 분류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노력은 시론적 차원의 탐색적 분류라고 볼 수 있다.

12) 예를 들면, 집단 내에 있는 사람, 회사(corporate)내에 있는 부서, 도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세계기구 속에 개별국가 등 이다. “actor”라는 용어의 사용이 반드시 “act”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를 가져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회네트워크의 적용은 행위자(actors)가 거의 동일한 유형의 행위자(actors) 집합(collection)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한 집합(collections)을 one-mode networks 부른다. 그렇지만, 일부 방법은 개념적으로 다른 유형이나 다른 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다른 설정을 통해서(from different sets)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Wasserman and Faust, 1994: 3).

13) Wasserman and Faust(1994: 4)는 행위자들의 시스템 간 관계성(relationship among systems of actors)으로 언급하고 system은 구분된 구성원들 사이의 결합(ties)으로 개념을 구분짓고 있다.

특히, 이러한 SNA의 분석방법 중에서 본 연구는 2-mode 네트워크의 방식을 사용한다¹⁴⁾.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이를 2-mode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일컫는데, 이는 행위자와 행위자, 또는 집단과 집단의 형태를 다루는 1-mode 네트워크와 달리 상이한 속성, 행위자, 집합체를 연결하여 이중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Skvoretz & Faust, 1999: 253-255). Borgatti(2008: 2)는 2-mode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mode 자료는 두 가지 속성(two sets of entities) 사이에 묶음(ties)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어 “mode”는 행위자, 노드 또는 점이라 일컬어지는 속성의 부류(class)를 말한다. 즉, 어떤 구성원은 그 조직 내 구성원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1-mode), 그 구성원은 다른 조직의 구성원과 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2-mode). 대부분의 네트워크 분석은 한 조직 내의 구성원 간 관계성을 파악하는 1-mode와 관련되나 특정 연구자들은 행위자가 사람과 조직, 또는 사람과 사건과 같은 행위자 부류(class) 간 관계성에 관심을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 내에 학생들은 캠퍼스 조직에 속하거나 조직에 고용인들은 전기포럼과 같은 곳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종류의 자료는 속성연합(affiliations)으로 언급된다. 조직 내의 공동참여나 사건에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위한 개인들 사이의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그들 구성원을 통해 조직들 사이의 결합(ties)은 다시 조직들을 통해 조직 내의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언급하였듯, 2-mode 네트워크의 측정에서는 행위자들 또는 다른 속성으로 결합된 2세트로 구성된다(Wasserman and Faust, 1994: 39).

한편, 본 연구는 상임위원회 네트워크의 위상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중심성(centrality) 지수를 측정하였다. 중심성은 각 행위주체와 관련된 개별 수준의 변수이지만, 전체 네트워크를 고려해야 계산가능한 지수이다(Mizruchi and Marquis, 2006; 구양미, 2008: 531). 중심성 분석에는 Freeman(1979)이 제안한 연결정도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 가장 대표적이고, 여기에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등의 네 가지 중심성 지수가 있으나¹⁵⁾, 여기서는 2-mode 위세중심성

14) 프로그램에서 2-mode 분석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연결정도(degree), 중심성, 협업필터링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심에 위치한 상임위원회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15) 우선, 연결정도중심성은 각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의 수를 기준으로 중심정도를 계량하는

(Eigenvector Centrality) 분석을 활용하였다.

위세중심성은 타 노드로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의미하며 연계된 상대노드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주는 개념이다(김용학, 2004)¹⁶⁾. 이는 각 노드의 중심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노드와 연결 관계가 있는 다른 노드의 중심성 지수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푸는 개념으로, 연결된 노드들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주는 고유벡터(eigenvector)를 이용한 중심성 지표이다(구양미, 2008: 531).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큰 중심조직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다른 노드와의 더 많은 연계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세중심성이 높은 조직은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재근 외, 2012: 426).

$$C_i = \sum_{j=1}^n a_{ij} \times C_j$$

* C_i = i 노드의 점수; a_{ij} = 인접행렬(adjacency)의 셀(0 또는 1); C_j = j 노드의 점수

이러한 2-mode 네트워크 위세중심성 분석방법은 상이한 속성들을 기초로 영향력 있는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고,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분석에 있어 상임위원회와 지역, 상임위원회와 의정경험의 관계는 2-mode 네트워크로 구성하였는데(Borgatti and Everett, 1997), 이는 상임위원회와 지역 및 상임위원회와 의

지표로, 한 노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들의 합을 이용해 중심성을 계산하는 중심성 지표이다. 둘째, 근접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에 얼마만큼 가깝게 있는가의 개념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 뿐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노드들 간의 거리의 합을 통해 계산하는 중심성 지표이다. 셋째, 매개중심성은 한 노드가 얼마나 다른 노드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개자 혹은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어떤 노드 j와 k 사이에 존재하는 노드 i의 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 상에서 j와 k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경로들 중에서 i가 포함되어 있는 경로의 비율을 측정하는 중심성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위세중심성은 각 노드의 중심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노드와 연결관계가 있는 다른 노드의 중심성 지수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푸는 개념으로, 연결된 노드들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주는 고유벡터(eigenvector)를 이용한 중심성 지표이다(구양미, 2008: 531).

16) 노드 A의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 (노드 A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 I에 대해서) [i의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 A와 i의 링크 가중치)]의 총합으로 언급할 수 있다(사이람, 2009: 8). 예를 들어, 나의 중요성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의 중요성의 총합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원의 의정경험은 각기 상이한 2개의 행위자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분석단위는 상임위원회와 지역, 상임위원회와 의정경험자 간 속성이 된다. 첫 번째 속성으로써 16개 상임위원회가 되며, 두 번째 속성은 이들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소속지역과 의정경험수가 된다. 이때 이들의 중심성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위해서 사회 연결망 분석 통계 패키지인 Netminer 4.0을 활용하였다.

3.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상임위원회 16개, 광역시, 특별시, 도를 포함한 지역 16개, 1선부터 7선까지의 의정재직횟수 7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들과 관련된 지역과 의정경험자를 그 하위노드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범위는 18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되며, 이는 국회구성 시점 별로 상임위원회가 상이하게 구성되고, 그에 따른 성격도 상이해 질 수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18대 이외에 다른 시점의 상임위원회를 고려하는 것은 분석의 초점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사 시기는 2011년 3월 2일 시점의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는 조사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개인 단위로는 중복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본 연구가 상임위원회라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양 쪽 모두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지역 및 의정경험횟수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각 상임위원회에 포함된 특정 지역 및 의정경험자의 수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원들의 수를 가중치로써 반영하고자 하였다¹⁷⁾. 한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제외하였는데, 이는 소속정당의 영향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 및 전문성과는 상이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였다.

17) 인원수를 가중치로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전체 지역의원수 대비 의원비율로 구성인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인원의 수가 법안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각 숫자를 가중치로 고려하였다. 그렇지만, SNA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분석은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선수가 포함될수록 즉, 다양한 관계성을 형성할수록 그에 대한 값을 높게 표출한다는 점에서 이 가중치가 곧 중요도 순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나타난 결과치의 해석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의정경험(선수)은 본 연구에서는 구분된 하나의 명목의 개념이고, 순차적인 강도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 민주당과 같은 것으로 SNA분석에서는 다루어지는 것이다.

IV. 분석논의

1. 기술통계분석

우선, 제 18대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 분포는 <표 2>와 같다.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지역 분포를 1순위부터 2순위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기도가 6개의 위원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5개의 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상임위원회의 지역 분포

상임위원회	순위	지역	Degree	상임위원회	순위	지역	Degree
법제사법위원회	1	전남	3	보건복지가족위원회	1	경기	4
	2	경기	2		2	충남	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	경기	6	여성위원회	1	경기	2
	2	서울	4		2	서울, 전북	1
국방위원회	1	경기	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	서울	8
	2	서울, 충남	2		2	경기	5
국토해양위원회	1	경기	7	정부위원회	1	서울	6
	2	서울	4		2	경기, 부산	3
국회운영위원회	1	경기	5	정보위원회	1	경기	3
	2	경북, 부산, 서울, 인천, 전남	2		2	부산, 서울	2
기획재정위원회	1	서울	6	지식경제위원회	1	경기	4
	2	경기	3		2	서울	3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	경남	4	행정안전위원회	1	서울	5
	2	경기	2		2	경북	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	서울	6	환경노동위원회	1	경기	5
	2	경기	5		2	경남, 대구, 부산, 서울, 대전, 제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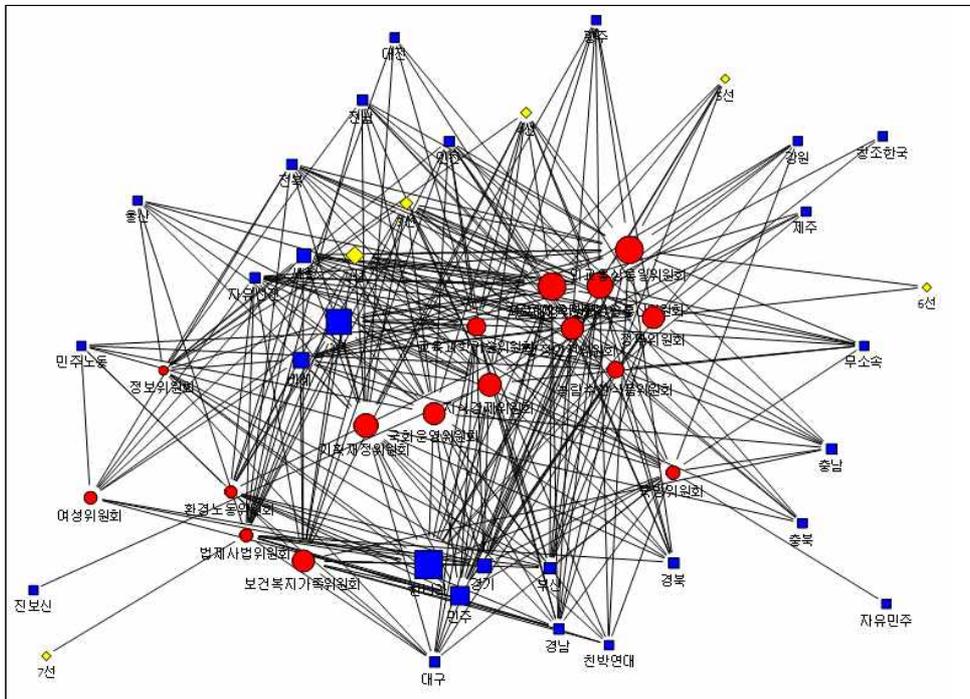
이처럼 16개의 상임위원회 중 경기나 서울의 분포가 높은 상임위원회는 총 11개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정 지역의 분포가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그만큼 여러 정책 분야에서 해당 지역의 이해가 많이 반영될 수 있기에, 상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지역의 고른 분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어서 전남, 경남이 각각 1개의 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다면 각 상임위원회마다 1순위와 2순위 간의 분포 격차는 대부분 2배 이하로 한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경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제 18대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정 횟수에 대한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3> 상임위원회의 의정 횟수의 분포

상임위원회	순위	의정횟수	Degree	상임위원회	순위	의정횟수	Degree
법제사법위원회	1	2선	7	보건복지가족위원회	1	초선	18
	2	초선	6		2	3선	3
	3	3선	2		3	2선	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	초선	10	여성위원회	1	초선	13
	2	2선	8		2	2선	3
	3	3선, 4선, 5선	1		-	-	-
국방위원회	1	초선	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	초선	9
	2	4선	5		2	2선	7
	3	2선, 3선	2		3	4선	6
국토해양위원회	1	2선	13	정무위원회	1	초선	12
	2	초선	8		2	2선	7
	3	3선	6		3	3선, 4선	2
국회운영위원회	1	초선	16	정보위원회	1	2선	5
	2	2선	6		2	3선	4
	3	3선, 4선	1		3	초선	2
기획재정위원회	1	초선	12	지식경제위원회	1	초선	11
	2	2선	10		2	2선	10
	3	3선	3		3	3선	3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	초선	11	행정안전위원회	1	초선	12
	2	2선	5		2	3선	7
	3	3선	2		3	2선	4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	초선	14	환경노동위원회	1	초선	9
	2	2선	7		2	2선	5
	3	3선	4		3	3선	1

결과를 살펴보면 총 16개의 상임위원회 중 초선의 분포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총 13개로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초선의 분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1순위인 초선의 분포가 2순위보다 6배가 많았고, 여성위원회에서는 4배 이상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초선의 분포가 많다는 것은 새로운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보다 창의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복잡하고 다양한 실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림 1> 상임위원회 다속성 네트워크 결과



따라서 2선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의원들과 의견을 교류 할 수 있도록 적절히 분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에서는 2선이 가장 많은 분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가 처리하는 사안의 특성과 의정횟수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된다. 즉 의정 횟수가 초선이 아닌 2선 이상의 분포가 높은 위원회에서는 보다 많은 의정경험과 전문성을 요

하는 비교적 크고 중요한 정책적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8대 상임위원회를 모두 포함한 네트워크는 <그림 1>과 같다.

2. 상임위원회 분석결과 논의: 2-mode 중심성 분석 (Eigenvector Centrality)

1) 상임위원회 지역중심성

<표 4>는 지역중심성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2-mode 중심성 분석결과 네트워크의 평균 중심성 지수는 0.234 였고, 표준편차는 0.087로써 최대값인 0.375와 비교할 때 표준편차가 매우 작아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상임위원회간 영향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는 최대값과 평균값이 0.14 차이만을 보인다는 것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4> 상임위원회 지역중심성 분석결과

상임위원회	Eigenvector Centrality	순위	상임위원회	Eigenvector Centrality	순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0.375463	1	지식경제위원회	0.2509	9
국토해양위원회	0.364524	2	환경노동위원회	0.177939	10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0.340338	3	국방위원회	0.164976	1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0.305698	4	보건복지가족위원회	0.162639	12
기획재정위원회	0.297293	5	농림수산식품위원회	0.145157	13
정무위원회	0.288098	6	법제사법위원회	0.143455	14
국회운영위원회	0.254051	7	정보위원회	0.143365	15
행정안전위원회	0.252595	8	여성위원회	0.08157	16
평균	0.234		표준편차	0.087	
최대	0.375		최소	0.082	

구체적으로,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인 상임위원회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써 0.375의 중심성 지수가 나타났다. 이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포함된 국회의원들

의 지역분포가 상대적으로 잘 배분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거나 또는 영향력이 있는 지역인 경기(0.631) 및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0.606) 다수일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서울출신 국회의원 8명, 경기지역 출신 국회의원 5명, 비례대표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중심성은 경기와 서울지역이 평균(0.183)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결성이 큰 상임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우선 및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 및 대북관계에 대한 정책 및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이기에 전문적이며, 따라서 지역별 분포는 다양성을 포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질문2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표 5> 지역별 중심성 분석결과

지역	Eigenvector Centrality	순 위	지역	Eigenvector Centrality	순 위
경기	0.631229	1	대구	0.132914	9
서울	0.606189	2	충남	0.109501	10
부산	0.208631	3	광주	0.097658	11
경북	0.180057	4	충북	0.087632	12
경남	0.172522	5	강원	0.08264	13
인천	0.145544	6	울산	0.079382	14
전북	0.142392	7	대전	0.072324	15
전남	0.142202	8	제주	0.038195	16
평균	0.183		표준편차	0.17	
최대	0.631		최소	0.038	

둘째, 국토해양위원회는 외교통상위원회에 비해 중심성 지수가 근소하게 낮아 2순위로 나타났다. 이 역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같이 국회의원들의 지역분포가 상대적으로 잘 배분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거나 또는 영향력이 있는 지역인 경기(0.631) 및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0.606) 다수일 가능성을 포함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7명, 서울출신 국회의원 4명, 경남지역 국회의원 2명, 경북지역 국회의원 2명, 충남지역 국회의원 2명, 충북지역 국회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국토해양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지역분포가 상대적으로 잘 배분되어 있음과 동시에 중요한 지역들과 연결성

역시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국토해양위원회가 지역을 중심으로 할 때 다양한 지역적 관점을 반영함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국토해양위원회는 4대강 사업이나, 국토개발과 같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정책을 다루고 있어 정책참여자와 관계자가 다수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보다 다양한 지역성을 포함할 것이라는 연구질문1에 해당하며, 국토해양위원회는 비교적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질문1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셋째, 중심성 지수가 0.3이상을 기록한 위원회는 상기된 두 위원회를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있었다¹⁸⁾.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는 국토해양위원회와 같이 국민의 삶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로 간주해볼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이 국민의 관심사이긴 하나 비교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위원회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중심성이 높아야 하고, 동시에 지역적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중심성이 0.34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할 때 높은 중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서울지역 국회의원 6명, 경기지역 국회의원 5명, 비례 5명으로 구성됨으로써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전문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역적 분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경기지역 6명, 서울지역 4명, 경남지역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적 다양성은 낮으나 경기지역과 서울지역의 집중으로 중심성은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성위원회의 경우 매우 낮은 중심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비례대표의 지역성을 제외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위원회는 다루는 업무가 국한되어 있어 지역반영에 있어서 중심이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지역마다 여성의 인권이 개선되고

18) 후순위에서 중심성의 합이 70%를 넘지 않는 위원회까지가 3.0 미만의 값이 된다. 즉, 소수의 위원회이나 그 가중치가 70% 이상인 위원회만을 대상으로 높은 중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중심성 합은 3.748이며, 기획재정위원회까지의 합은 2.36이고, 이는 63%이다. 하지만, 교과위까지 포함시킬 경우 합은 2.66이고, 이는 72%에 해당하여 0.3을 넘으면 70% 비중을 상회한다. 따라서, 70% 이하의 위원회까지의 기준치는 3.0이 된다.

있고, 이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을 가정할 때 향후 여성위원회의 지역별 분포와 함께 업무활동에 있어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위원회의 지역적 역할에 대한 연구는 향후 보완되고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림 2> 지역 연결중심성 결과 도식도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을 중심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우선, 국민의 삶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이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비교적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야함과 동시에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삶이 가장 우선된다는 점에서 중심성이 높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상기된 연구문제를 토대로 국토해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5개가 이들에 속하는 것이었으며, 이 중에서 국토해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개만이 평균수치(0.234) 상회하고 있었다. 즉, 환경노동위원회(0.177), 보건복지가족위원회(0.162), 농림수

산식품위원회(0.145)는 중심성이 평균보다 많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들 중 환경노동위원회(7지역)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7지역)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지만, 영향력 있는 지역과는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음으로써 지역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교적 소외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경기, 충남 2개 지역만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관점을 포괄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에 제도적인 보충을 통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문지식을 요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이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비교적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지역차원에서 높은 중심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본 연구에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상임위원회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언급하였다. 그렇지만, 국방위원회(0.164)를 제외하고는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의 분포 집중으로 인해 나머지 4개 위원회는 높은 중심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외교통상통일위원회(0.375), 교육과학기술위원회(0.305), 기획재정위원회(0.297)는 평균수치(0.234)에 비해서 매우 높고, 지식경제위원회(0.25) 역시 평균수치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차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 상임위원회들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역량을 요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이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비교적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에서도 중심성이 낮지 않아야 위원회 전반을 조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치적 역량을 요구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로 언급하였다. 분석결과,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평균수치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보완할 필요는 있으나, 다른 3개의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중심성 수준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상임위원회 의정경험 중심성¹⁹⁾

<표 6>은 의정경험 중심성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2-mode 중심성 분석결과 네트워크의 평균 중심성 지수는 0.243 였고, 표준편차는 0.06로써 최대값인 0.32와 비교할 때 표준편차가 매우 작아 의정경험을 기준으로 할 때 상임위원회간 영향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이는 최대값과 평균값이 0.077 차이만을 보인다는 것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6> 의정경험 중심성 분석결과

상임위원회 (원가중치)	Eigenvector Centrality	순 위	상임위원회 (변환가중치)	Eigenvector Centrality	순 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0.32007	1	국토해양위원회	0.382212	1
국회운영위원회	0.316214	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0.350506	2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0.307917	3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0.303665	3
기획재정위원회	0.296635	4	기획재정위원회	0.301507	4
지식경제위원회	0.280642	5	지식경제위원회	0.295249	5
국토해양위원회	0.27261	6	행정안전위원회	0.26485	6
정무위원회	0.267429	7	정무위원회	0.253981	7
행정안전위원회	0.257186	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0.229332	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0.239693	9	국회운영위원회	0.22818	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0.238942	10	보건복지가족위원회	0.210251	10
여성위원회	0.235102	1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0.1898	1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0.229932	12	국방위원회	0.188555	12
환경노동위원회	0.193327	13	법제사법위원회	0.185586	13
법제사법위원회	0.167604	14	정보위원회	0.1754	14
국방위원회	0.163569	15	환경노동위원회	0.153806	15
정보위원회	0.095447	16	여성위원회	0.129659	16
평균	0.243		평균	0.24	
표준편차	0.06		표준편차	0.069	
최소	0.095		최소	0.13	
최대	0.32		최대	0.38	

19) 원가중치와 변환가중치의 차이를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는데, 원가중치는 각 선수별 차이를 두지 않고 분포정도만을 고려하여 분석한 것이며, 변환가중치는 선수가 높아질수록 가중치(+1)를 부여하여 분석한 것이다. 의정경험의 영향력 즉, 선수가 높을수록 더 큰 영향력을 지닌다고 가정한 것이다. 두 분석결과를 모두 논의함으로써 비교합의를 주고자 하였다. 물론, 의정경험이 실제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변환가중치의 분석결과가 해석에 있어서는 보다 적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인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써 0.320의 중심성 지수가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포함된 국회의원들의 의정경험이 상대적으로 잘 배분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거나 또는 영향력이 있는 의정경험인 1선(0.84)과 2선(0.47)이 다수일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 중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선 국회의원이 8명, 3선 국회의원이 3명, 2선 국회의원이 2명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에서 의정경험 중심성은 1선이 평균(0.844)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결성이 큰 상임위원회는 실무업무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의정경험을 지닌 위원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연구가설1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지역별 중심성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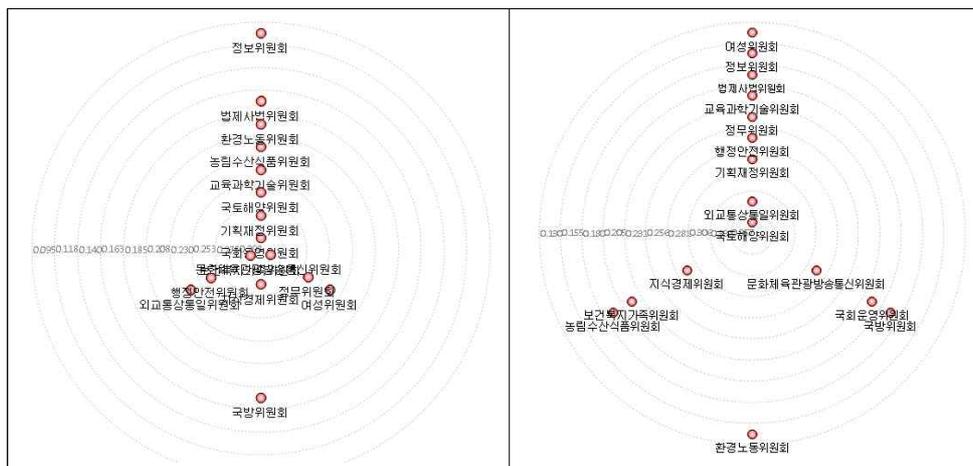
의정경험 (원가중치)	Eigenvector Centrality	순 위	지역 (변환가중치)	Eigenvector Centrality	순 위
1선	0.844858	1	2선	0.654889	1
2선	0.478896	2	1선	0.509097	2
3선	0.214765	3	3선	0.460395	3
4선	0.09895	4	4선	0.294201	4
5선	0.02927	5	5선	0.10574	5
6선	0.0096	6	6선	0.044585	6
7선	0.003173	7	7선	0.015969	7
평균	0.24		평균	0.298	
표준편차	0.292		표준편차	0.233	
최소	0.003		최소	0.016	
최대	0.845		최대	0.655	

둘째, 국회운영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비해 중심성 지수가 근소하게 낮아 2순위로 나타났다. 이 역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같이 국회의원들의 의정경험이 상대적으로 잘 배분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거나 또는 영향력이 있는 의정경험인 1선(0.84)과 2선(0.47)이 다수일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 중 국회운영위원회는 1선 국회의원이 16명, 2선 국회의원이 6명, 3선과 4선 국회의

원이 각각 1·명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측면에서 의정경험 중심성은 영향력이 강한 1선 의원들의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1선부터 4선까지 비교적 다양한 의정경험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 중심성이 높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는 정치적 역량을 요하는 상임위원회로써 상대적으로 다양한 의정경험자들이 분포될 수 있다는 연구가설3의 관점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심성 지수가 0.3이상을 기록한 위원회는 상기된 두 위원회를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같이 국민의 삶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로 간주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의정경험자들이 포함되고, 그 중심성이 높아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중심성이 0.307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의정경험자를 중심으로 할 때 높은 중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1선의원이 14명, 2선의원이 7명, 3선의원이 4명으로 의정경험자 분포 역시 잘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는 4선이상의 다선의원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함된 국회의원들의 의정경험 분포가 비교적 균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림 3> 의정경험 연결중심결과 도식도



마지막으로, 정보위원회의 경우 매우 낮은 중심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1선의원들의 비중이 높아 영향력이 크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3선의원들이 많은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보위원회가 국가운영을 리드할 수 있고 비교적 다선의원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분명,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계획하고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선의원들의 영향력과 권위가 보다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치적 경험에 대한 실증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의정경험을 중심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우선, 국민의 삶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이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비교적 다양한 의정경험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정책의 추진력을 위해서 1선 및 2선의원들이 다수 분포해야할 필요가 있다. 상기된 연구문제를 토대로 국토해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5개가 이들에 속하는 것이었으며, 이 중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0.272) 3개가 평균수치를(0.243) 상회하고 있었다. 즉, 환경노동위원회(0.193), 농림수산식품위원회(0.229)는 중심성의 평균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들 중 환경노동위원회는 1선이 9명, 2선이 5명, 3선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7지역)는 1선이 11명, 2선이 5명, 3선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1선의 비중이 약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중요한 점은 이들 위원회는 국민의 삶 및 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실무업무에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1선 의원들이 보강될 필요가 있으며, 다선의원들이 더 요청됨에도 의정경험자의 분포가 그에 부합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문지식을 요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이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정치적 지식보다는 전문적 지식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열의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초선 및 재선의원들이 다수포진할 것이라는 관점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상임위원회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언급하였다. 이는 국방위원회(0.164)를 제외하고는 1선의원과 2선의원의 분포 집중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는 평균수치를 상회하였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교육과학

기술위원회는 평균에 근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1선의원과 2선의원의 분포가 집중되어 있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 초선 및 재선이 많을 것이라는 연구질문2의 관점을 지지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역량을 요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이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보다 정치적 역량이 높은 의원들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치적 역량을 요구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로 언급하였다. 분석결과,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평균수치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1선의원과 2선의원의 분포에 따른 결과를 의미하며, 이에 다선의원의 분포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경우 1선이 16명, 2선이 6명, 3선과 4선이 각각 1명으로 구성되었고, 정무위원회의 경우 1선 12명, 2선 7명, 3선과 4선이 각각 2명씩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1선이 12명, 2선이 4명, 3선이 7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1선 6명, 2선 7명, 3선 2명으로 구성되었고, 정보위원회는 1선이 2명, 2선이 5명, 3선이 4명으로 구성되었다. 즉, 실제로 다선의원인 3선이상의 분포를 감안할 때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만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라 판단해 볼 수 있다.

3. 연구질문 논의: 상임위원회 지역중심성 및 의정경험중심성 결과비교

<표 8>는 상임위원회 지역중심성 및 의정경험중심성 순위를 비교한 것이다. 우선, 두 분석에서 변동이 없었던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3위), 행정안전위원회(8위), 법제사법위원회(14위)였으며, 이에 반해 순위가 5위 이상의 변화를 나타낸 위원회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1위→9위), 보건복지가족위원회(12위→1위), 교육과학기술위원회(4위→10위), 국회운영위원회(7위→2위), 여성위원회(16위→11위)로 나타났다. 지역중심성과 의정경험중심성 지수가 유사할수록 지역의사와 영향력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변동이 없었던 위원회는 3곳이고, 비교적 큰 변화가 있었던 위원회는 5곳이기에 일치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효용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법률적으로 구현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정당 및 국회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 위원회 간 지역성 및

의정경험 비율을 균등화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8> 지역 및 의정경험 중심성의 비교

지역	순위	의정경험(변환가중치)	순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	국토해양위원회	1
국토해양위원회	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4	기획재정위원회	4
기획재정위원회	5	지식경제위원회	5
정무위원회	6	행정안전위원회	6
국회운영위원회	7	정무위원회	7
행정안전위원회	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8
지식경제위원회	9	국회운영위원회	9
환경노동위원회	10	보건복지가족위원회	10
국방위원회	1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1
보건복지가족위원회	12	국방위원회	1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3	법제사법위원회	13
법제사법위원회	14	정보위원회	14
정보위원회	15	환경노동위원회	15
여성위원회	16	여성위원회	16

둘째, 두 가지 중심성 분석결과는 비교적 연구질문1의 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상대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기 쉬운 국토해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양한 의정경험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대 상임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국민대응성을 높여야 하는 사안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재의 구성은 다음 상임위원회의 구성에도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 두 가지 중심성 분석결과는 연구질문2의 내용 역시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치적인 지식 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어야 하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

원회는 지역적 분포와는 관련없이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초선 및 재선의원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중심성 분석결과는 연구질문3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국가운영과 관련된 측면에서 보다 정치적 역량이 높은 위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국회운영위원회, 정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는 대체적으로 3선의원의 비중이 높았다. 물론, 의정경험의 횡수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추후의 검증이 요구되는 부분이지만, 분명 국가 운영 및 방향설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에 초선 의원의 비중이 높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표 9> 상임위원회 범주별 평균 비교

연구문제	상임위원회 범주	지역중심성 평균	의정경험 중심성 평균(변환가중치)
연구가설1	국민생활 연관 위원회	0.238	0.248
연구가설2	전문지식 필요 위원회	0.279	0.273
연구가설3	정치역량 필요 위원회	0.216	0.222

한편, 상기된 가설내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범주별 평균을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생활 연관 위원회의 경우 지역중심성 평균은 0.238, 의정경험 중심성 평균은 0.248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1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상임위원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며,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특히, 다른 연구가설과 비교할 때 지역중심성과 의정경험 중심성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만, 평균의 경우는 두 가지 기준 모두 세 가지 범주 중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평균의 결과는 연구가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한 가지는 본 연구의 가설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기초가 되었던 유형 분류를 재고려하여 향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연구가설1의 범주에 속한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현실적으로 분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역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나 후자

의 경우가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전문지식 필요 위원회의 경우 지역중심성 평균이 0.279, 의정경험 중심성 평균이 0.273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2의 경우 지역성과는 관련없이 의정경험이 낮은 의원들이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집중적으로 포진하였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는 초선 및 재선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특정 상임위원회에 분포되어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다. 전문지식 필요 위원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방위원회)의 총 인원은 84명이고, 이 중 초선 및 재선의원이 70명으로 이를 제외하면 14명만이 해당하였다(19%). 그렇지만, 이 14명의 경우도 3선에서 5선까지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여 의정경험 중심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적 분포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 높은 중심성을 보여주었는데, 전문지식 필요 위원회로 구분된 위원회가 지역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향후 검증을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역량 필요 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의 경우 지역중심성 평균이 0.216, 의정경험 중심성 평균이 0.222로 나타났다. 연구가설3은 정치역량 필요 위원회는 지역적 분포와 관련없다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평균결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아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인원 72명 중 초선 및 재선의원을 제외하면 17명이 해당하였다(23.6%).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3의 경우 비교적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결과와 평균비교 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통해서 18대 상임위원회의 지역 및 의정경험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상임위원회의 속성에 따라서 지역 및 의정경험이 잘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 결과 상임위원회가 바람직한 분포 및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면, 이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삶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이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지만, 영향력 있는 지역과는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음으로써 지역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교적 소외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다양한 지역 관점을 포괄하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이들 위원회는 국민 삶 및 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실무업무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1선 의원들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다선의원들이 더 요청된다는 점이었다. 둘째, 전문지식을 요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이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분석결과, 지역차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 상임위원회들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1선의원과 2선의원의 분포가 집중되어 있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 특성에 부합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역량을 요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이다. 분석결과, 이러한 위원회들은 전체적으로 중심성 수준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만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라 판단해 볼 수 있었다. 다만, 의정경험의 횡수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추후의 검증이 요구되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지역적 분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국민의 삶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에 더욱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입법 결정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영향력이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는 상황 하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형평성과 삶의 질차원에서 고른 지역적 분포를 고려한 위원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역개발이나 복지와 같이 특정 지역에 이익을 가져오는 법안의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고른 분포는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원들의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때, 자신의 전문분야에 맞게 선택을 하겠지만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의 정원이 찰 경우 다선의원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18대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특징을 연구한 가상

준(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7대 국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위원회 배정에 있어 의정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만, 선임우선주의를 중시하는 한국 정치문화 속에서 상임위원회 배정을 설명함에 있어 여전히 의정경험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다 합리적인 입법 결정은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전문지식에 의존하는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의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한계 역시 내포하고 있다. 우선, 국회의원은 법률상 1인당 2개 위원회의 겸직이 가능하며, 이러한 겸직으로 인해 두 상임위원회에서 공통으로 포함된 국회의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²⁰⁾. 이는 본 연구가 상임위원회라는 조직이고, 중복으로 편성되었지만 구성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고 지속한다는 점에서 중복으로 인한 문제가 작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은 일의 중복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한 상임위원회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내재한 한계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두 가지 큰 관점에서의 구성과 중심을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지만, 시론적 차원의 구분과 분석이라는 점에서 이 결과에 기초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와 검증, 그리고 확인을 통해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고 규명한 후에야 정책 및 제도적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나아가 국회 입법기능의 핵심기능을 담당한다(서인석 외, 2010: 98).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구성은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임위원회 제도구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회의원들의 심층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일반정책과 달리 정치적 사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추진하는 것 역시 힘든 일이지만, 강화되고 있는 입법역량과 상임위원회 역할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20) 사실적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회보좌관 3인(민주당 2명, 새누리당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복수위원회 배정 역시 개인의 의사에 따라 관심이 있을 경우 복수선택이 가능하다고 한다. 보통은 예산특별위 또는 법제사법위와 복수로 하는데, 3개의 위원회를 동시에 선택하는 의원들도 간혹 있으며, 무엇보다 의원개인의 관심이 복수위원회 배정의 결정요소임을 인터뷰 대상자들은 강조하고 있었다.

■ 참고문헌

- 가상준. 2009.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의 특징.” 《한국정당학회보》 8(2):67-95.
- _____. 2007. “설문조사를 통해 본 17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세계지역연구논총》 25(3):53-75.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8.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기능 강화방안 : 영, 미 의회와의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대한민국국회 도서관.
- 구양미. 2008. “경제지리학 네트워크 연구에서 SNA의 활용: 한국 고령친화산업의 개인 행위자 네트워크를 사례로.” 《제3회 복잡계 컨퍼런스-복잡계와 인문학/사회과학의 만남》 1-13.
- 김민전. 1996. “14대 국회의원의 의사결정구조: 상임위원회의 배정과 그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1996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43-263.
- 김재근·서인석. 201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구조적 특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26(3):409-438.
- 김용학. 2007. 《사회연결망분석(개정판)》 서울:박영사.
- 김철수. 2007. 《헌법학개론》. 서울:박영사.
- 곽해근. 1998. “예결산 심의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제6차 한국정치포럼》
- 권영성. 2009. 《헌법학원론》. 법문사.
- 박찬표. 1998. “국회상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제2차 한국정치포럼 발표논문》.
- _____. 2004. “국회위원회제도의 이론적 탐색과 개선방안.” 《헌법학연구》 10(3).
- 박천오. 1998.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선호성향과 동기.” 《한국정책학회보》 7(1): 293-315.
- 이성로. 2001.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의 결정요인.” 《중앙행정논집》 15-1: 191-208.
- 손병권. 2004. “제17대 초선의원 의정활동 평가 ; 17대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의정연구》 14-1:85-109.
- 서인석·이동규·박형준. 2010.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정책결정 행태요인에 관한 연구: 수자원 예산심의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의사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1):79-100.
- 손연우. 2010.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상정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 13-17대 국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우. 2009. “국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전문성과 대표성의 재평가.” 《의정연구》 15(1):145-176.
- 전진영. 2012. “제18대 국회 입법활동의 특징과 평가.” 《의정연구》 18(2):183-192.
- 최정원. 2001.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 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3):129-151.
- 홍완식. 2008. 《의원입법의 절차적 합리화 방안: 법률안 제출 이전 단계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 Arnold, R. Douglas. 1979. *Congress and the Bureaucracy: A Theory of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Borgatti, S. P., & Everett, M. G. 1997. “Network analysis of 2-mode data.” *Social Networks* 19(3):243-269.
- Borgatti, S.P. 2008. [forthcoming]. 2-Mode Concepts in Social Network Analysis. *Encyclopedia of Complexity and System Science*.
- Burke, Edmund. 1790.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General Books.
- Cox, Gary W., & Mathew D. McCubbins. 1993. *Legislative Leviathan: Party Government in the Hous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avidson, Roger H., and Walter J. Oleszek. 1996. *Congress and Its Members*. 5th ed. Washington D.C.:CQ Press.
- Deering, Christopher J. & Steven S. Smith. 1997. *Committees in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 Ellickson, Mark. C. 1992. “A Path Analytic Study of the Missouri House of Representative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7(2):285-302.
- Fenno, Richard F., Jr. 1973. *The Internal Distribution of Influence: The House. In The Congress and America's Future*, ed. David Truman.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 Francis, Wayne L. 1962. “Influence and Interaction in a State Legislative Bo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6:953-961.
- Frantzich, Stephen E. 1979. “Who Makes Our Laws?: The Legislative Effectiveness of Members of the U. S. Congres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409-428.
- Fiorina, Morris P. 1974. *Representatives, Roll Calls, and Constituencies*. Lexington: D.C. Heath.

- Fiorina, Morris. 1987. "Alternative Rationales for Restrictive Procedures."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3:337-345.
- Galloway, George B. 1955. *The Legislative Process in Congress*, New York: Thomas, Crowell co.
- Goodwin, G. Jr. 1970. *The Little Legislatures: Committees of Congres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Mayhew, David. 1974.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illigan, Thomas W., and Keith Krehbiel. 1987. "Collective decision-making and standing committees: An informational rationale for restrictive amendment procedures."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3:287-335.
- Meyer, Katherine. 1980. "Legislative Influence: Toward Theory Development Through Causal Analysi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5(4):563-585.
- Mizruchi, M. S. and Marquis, C. 2006. "Egocentric, sociocentric, or dyadic?: identifying the appropriate level of analysis in the study of organizational networks." *Social Networks* 28(3):187-208.
- Freeman, L. C.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3):215-239.
- Krehbiel, Keith. 1991. *Information and Legislative Organiz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itkin, H. Fenichel. 1967.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kvoretz, John & Faust, Katherine. 1999. "Logit Models for Affiliation Networks." *Sociological Methodology* 29:253-280.
- Squire, Peverill. 1988. "Member Career Opportunities and the Internal Organization of Legislatures." *Journal of Politics* 50:726-744.
- Truman, David. 1966. *The Congress and America's Futu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Wasserman, S. and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ssert, W.G. 1988. Legislative Study Priorities for the Elderly. *State of North Carolina Legislative Research*. Commission Study Committee on Gerontology, Raleigh, NC, November 24.